

—구미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안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4년 6월 19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4년 6월 21일

라. 상정일자 : 2004년 6월 28일

제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 재 응

나. 제안이유

-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(주민등록법 제20조)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·공제 등에 가입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
- 주민등록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대비, 보험·공제 등에 가입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여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주민등록의 신고(변경신고 포함)업무, 주민등록증 발급업무,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.

- 보험의 가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 하되 보험가입금액은 각 업무별로 1인당 최저 200,000천원이상 가입 토록 규정함.
- 보험료의 지급은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 토록 규정함.
-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관계보험회사에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되,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 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대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, 보험금액, 보험료, 보험기간,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 관리토록 함.

라. 참고사항

- 주민등록법 제20조(보험·공제 등에의 가입)
- 시(군·구)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표준안(경상북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춘 배

-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경상북도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 가입조례 표준안 의거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들의 재정적 책임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임.
- 따라서,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, 보험가입 방식과 금액, 보험료의 지급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